

「2026년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」

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

[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] 과업지시서

2026. 7.

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

I. 사업개요

1. 추진배경

- 가. 용봉패션의거리 내 공용재산(조형물 등)에 고보조명, 간접조명을 통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고, 변화된 모습을 고객들에게 홍보.
- 나. 비엔날레부터 설치된 조명을 이어가 비엔날레의 자원과의 통일성 강조 및 패션의거리의 홍보에 도움.

2. 과업개요

사업명	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(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)
과업명	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(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)
사업금액	75,000천원 (부가세포함)
사업기간	계약일로부터 '26. 10. 31. 까지
사업범위	용봉패션의거리 일원

< 사업대상지 현황 및 주요내용 >

- 용봉패션의거리 위치 : 광주 북구 용주로 2, 용봉패션의거리 일원



○ 판매 품목 비율

구분	농산물	축산물	수산물	가공식품	의류신발	가정용품	음식점	기타소매업	합계
점포수	0	0	0	0	57	0	0	0	57
비율(%)	0	0	0	0	100	0	0	0	100

○ 시장 특화요소

업태의 특성	- 의류, 신발, 잡화 등 패션 관련 소매업이 밀집된 선형(Street) 상점가 형태 -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개인 편집숍이 혼재되어 있으며, 인근의 식음료(F&B) 상권과 인접해 있어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조
주요 품목	- 아웃도어, 스포츠, 골프웨어, 캐주얼의류, 신발, 액세서리 등
집객요소	- 전남대학교라는 광주, 전남 내 가장 큰 자원과 인근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어 배후 수요와 청년층 유동 인구가 풍부함 -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우수하며, 주변 맛집 거리(전철우사거리 등)와의 연계를 통한 2차 집객(쇼핑 후 식사/휴식) 유도 가능
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현황	- 현황: 현재는 단순 브랜드 의류 판매 위주로 운영되어, 방문객을 장기 체류하게 만드는 자체 특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 - 개선방향: 단순 구매를 넘어 퍼스널 컬러 진단,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, 패션 거리 스탬프 투어 등 '체험형 SW 프로그램' 개발이 진행/기획 중이며,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한 거리 버스킹 및 플리마켓 도입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장

○ 상권 환경 매력도

주요자원1	주요자원2
	
전남대학교 학생 및 주변 주거 및 상권	비엔날레 등 예술 및 연계 자원 보유

3.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

가. 입찰방법 : 경쟁입찰(제한경쟁)

나. 입찰 참가자격
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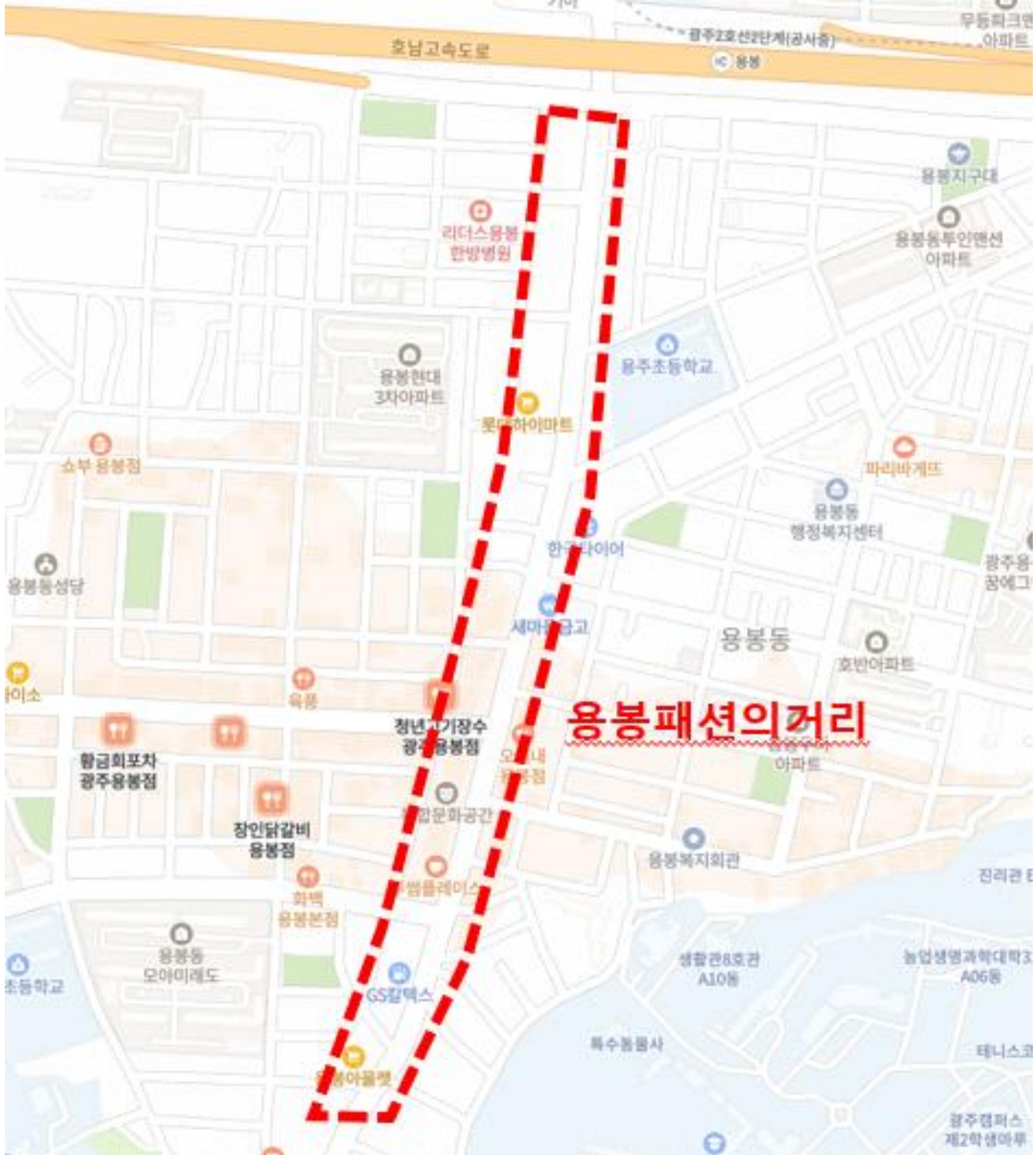
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(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)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

- 1).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
- 2)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나라장터)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(업종코드 : 0037)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(환경디자인 분야, 업종코드 : 4442) 면허(등록)를 모두 보유한 자
- 3)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① LED경관조명기구(옥외조명 및 설비) 및 ② 조명용 제어장치(배전조정장치 및 액세서리) 두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하고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KS C 7713(LED 경관등) 인증을 보유한자(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 및 인증에 한함)
- 4). 최근 3년 이내에 LED 경관조명 제조 및 설치 분야에서 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자
- 5)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
- 6)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③항에 의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
- 7).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,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고 공모에 참가한 자(업체)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임
- 8).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조달청(나라장터)에 등록한 업체
- 9).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

II. 과업내용

1. 과업범위

가. 공간적범위



나. 내용적 범위

- 거리조명 마스터플랜 및 세부 연출 디자인 기획
- 경관조명 기구 등 내용의 설계, 제작, 구입 및 설치
- 조명 제어 시스템 등 구축 및 연출 프로그래밍
- 전기 배관·배선 및 구조물 설치 공사
- 시운전, 테스트,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

2. 세부과업내용

1) 사업장소/기간

사업장소	종류	기간
용봉패션의거리	거리조명	26. 7월~10월

2) 일정안내

<추진일정>

추진 내용	7월				8월				9월				10월			
	1주	2주	3주	4주	1주	2주	3주	4주	1주	2주	3주	4주	1주	2주	3주	4주
업체선정(입찰)																
업체선정, 일정 협의																
시공 실시																
정산 및 보고서																
거리조명 운영																

*** 과업추진일정은 상인회 사업단과 상의하고 변경할 수 있음

3) 추진예산

<추진예산>

(단위: 천원)					
세부항목		단가	수량	단위	금액
용봉 거리조명	가로등 파이프형 조명 (36W, DC 24V, 자동 RGB 등)	4,000	15	조	60,000
	설치비, 배선(전기공사) 등	1,000	15	개소	15,000
소계					75,000
합계(부가세포함)					75,000

*** 사업계획서 초안의 내용이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고바람

*** 사업단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

4) 세부과업

[기본사항]

※ 모든 과업은 상인, 사업단의 승인을 거친 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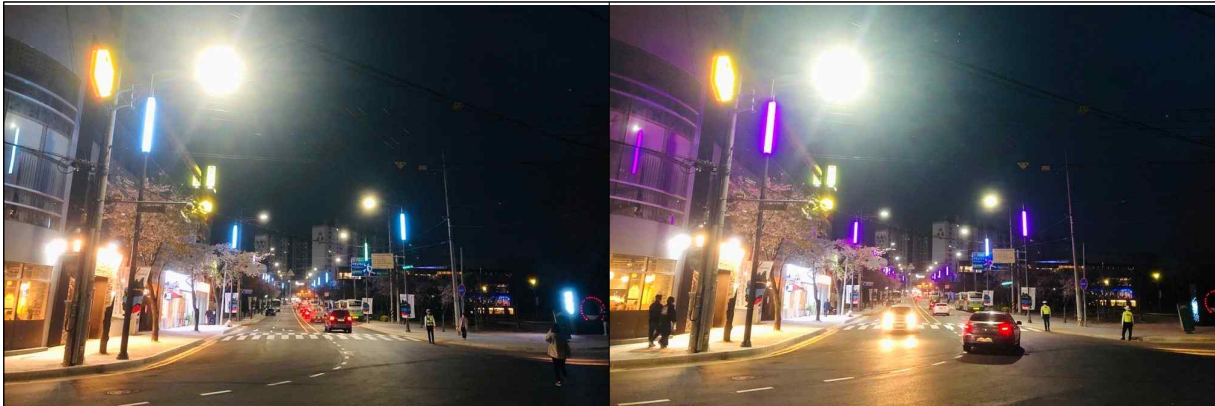
(가) 디자인 기획 및 설계 단계

- 용봉패션의거리 건축물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조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.
-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여 상가 주민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없는 쾌적한 광원 설계.

(나) 제품 제작 및 설치 단계

- 정격 규격을 만족하고 내구성이 높은 옥외용 LED 조명기구(IP65 등급 이상 방수·방진) 적용.

- 가로등주 및 상가 벽면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낙하 방지 안전장치 반영.
- 기본적인 내용은 비엔날레의 거리에 기 설치된 조명에 준하여 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고, 운영하도록 함.



참고사진(비엔날레 기 조명 설치사진)

(다) 시스템 제어 인프라 구축

- 통합 제어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조명 온/오프 및 연출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.

5)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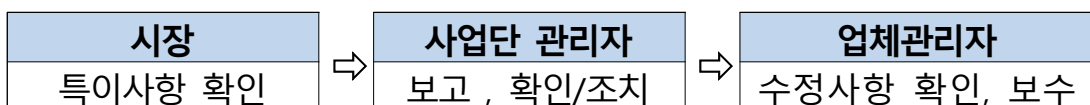
-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(과업종료 후 10일 이내)

- 사진대지 포함 , 보고서 제출

※ 수행사에서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※ 과업기간 동안 보수, 관리 요청 시, 무상 수리, 관리

* 보고체계



III.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등

1. 추진 일정

- 사업착수 : 2026년 7월 계약 체결 후
- 착수계 제출 :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
 - 책임연구원선임계, 청렴계약 서약서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자료 제출
- 결과보고서 : 과업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제반서류 제출

2. 성과품 제출

- 결과보고서 : 5부(A4, 칼라)
- 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, 증빙사진(원본) 일체를 담은 USB 1식
- 사업비 정산서
 - ①용역비 내역서
 - ②세금계산서
 - ③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④통장사본
 - ⑤국세 완납증명서(원본)
 - ⑥지방세 완납증명서(원본)
 - ⑦4대보험 완납증명서(원본)

※1인 기업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, (개인)건강보험완납증명서

IV. 과업수행 일반지침

1. 기본지침

가. 일반지침

- 1)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. 다만, 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설명서에 의거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(이하 '사업단')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
- 2)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, 주제, 기본방향,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.
- 3)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하며, 조사 및 착수 전 착수계, 과업수행(세부)계획안, 보안각서,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수행사는 과업 수행완료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모든 성과품 항목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공공시설로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운영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, 사업내용 일체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6)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며, 운영·관리 및 이용객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, 유지 보수 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7) 수행사의 성과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처(사업단)가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8) 사업수행자는 결과를 제작하여 제출할 시 특허권, 저작권, 초상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9)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.
- 10)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나.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

- 1)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,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수행사는 사업의 운영과정에 상인 및 고객들과 함께 진행하고,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 외부 유출이나 본 과업 외 목적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.
- 3)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보안사항의 불이행 및 시스템 해킹, 고객 데이터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진다.
- 4)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과업폐기물은 완전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.

다. 기타지침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

- 1)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과업 발표회(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 등)나 상인 대상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,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(PT, 매뉴얼)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.
- 2)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시장의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,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부주의·고의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.
- 3)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,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4)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.

라. 용역공정 변경조건 및 중지 관련사항

- 1)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
- 2)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)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·허가,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,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(버스조합 광고 심의 지연, 방송사 편성 스케줄 변동

등)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2. 사업 수행조건

- 가.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사업수행자의 과실/하자로 인해 손실 또는 피해,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운영 사업수행 중이라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·수정하여야 한다.
- 라.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·허가(시내버스 외부 광고물 심의, 스크래치 복권 프로모션 경품 추첨 관련 법적 검토 등)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마.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, 인력채용 및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우선 부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- 바. 본 과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집행되므로, 수행사는 공단의 사업비 관리 지침 및 정산 가이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. 추후 지자체(광주 북구청) 및 공단의 교차 감사 과정에서 부당 집행이나 단가 과다 책정으로 판명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, 준공 이후라도 수행사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.
- 사. 본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관련 계약 예규에 준한다.